

施行 슈전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u>제12조(주민등의 의견성취) ① 관리청이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당해 어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지자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견을 듣고자 하는 목적 2. 당해 어항시설계획의 개요 3. 기타 필요한 사항 <p><u>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는 지역주민·이해관계인 및 당해 어항소재지에 있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장의 의견을 첨취하여야 한다.</u></p> <p><u>③ 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들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의견서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 및 직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제출된 의견내용 <p><u>제13조(주민등의 의견청취생략) 법 제8조제1항단서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설구역의 일부변경 2. 지형시정 또는 어항여건의 변경으로 인한 어항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3. 기본시설구조물의 단면변경 4. 어항시설의 유자·보수 <p><u>제14조(시설계획의 협의) ① 법 제11조제1항단서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제 13조각호의 사항에서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u></p> <p><u>② 시·도지사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청장과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u></p> <p><u>③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0일을 말한다.</u></p> <p><u>제15조(시설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고시) 관리청은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를 하고자 할 경우 당해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항의 명칭·종류·위치 및 구역 2. 어항시설계획의 주요내용 또는 주요변경내용 3. 기타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u>제16조(비관리청의 어항시설사업화기준) ① 법 제12조제2항분문의 규정에 의하여 어항시설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u></p> <p><u>② 법 제12조제2항분문의 규정에 의하여 어항시설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한다)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허가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관리청이 인정할 때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그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u></p> <p><u>제17조(귀속대상외의 어항시설) 법 제12조제3항단서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어항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조식 부진교, 하역기계, 급유·급수를 위한 보급시설(강철재 저장탱크에 한한다) 2. 여객승강장 시설 3. 얼음공급을 위한 송빙고 및 세빙탑시설 4. 기타 관리청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p><u>제18조(어항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예치) ① 관리청은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관리청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비용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항시설사업과 관련하여 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예상되는 보상비용 2. 어항시설사업과 관련하여 기존 어항시설의 이전 또는 철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예상되는 이전 또는 철거비용 3.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순공사비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비용, 다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산업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어촌계(이하 "어촌계"라 한다)와 정부 투자기관이 어항시설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u>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에 한한다)과 그 예치방법 및 예치기간은 관리청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u></p> <p><u>제19조(사업계획의 변경 및 폐지명령)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계획을 변경한 경우 2. 법 제19조제1항각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p><u>제20조(사업대행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건설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과 광물채취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물채취업(비단광재에 한한다)을 말한다.</u></p> <p><u>제21조(사업의 위탁)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항수축사업자로부터 그 사업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조제2항제2호(가)의 수송시설중 철도에 관한 사업에 있어서는 철도청 2. 법 제2조제2항제2호(가)의 수송시설중 도로 및 교량에 관한 사업에 있어서는 건설부 또는 도로공사 3. 법 제2조제2항제2호(사)의 어업용 통신시설에 관한 사업에 있어서는 청신관서 <p><u>제22조(공공단체의 종류)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을 이용하는 등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단체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자치단체 2.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 3.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항협회(이하 "어항협회"라 한다) 4. 예산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어선협회 5. 한국어업기술훈련소법에 의한 한국어업기술훈련소 6. 기타 수산관계 비영리법인 <p><u>제23조(어항시설의 보수등의 범위)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의 보수 및 관리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는 어항시설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원전한 보수 및 관리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총액을 말한다.</u></p>
(신) 설	<p><u>제1조(목적) 이 영은 어항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u>(신) 설</u></p>
(신) 설	<p><u>제17조(심의회의 설치)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어항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수산청에 중앙어항심의회(이하 "중앙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이하 "도"라 한다)에 지방어항심의회(이하 "지방심의회"라 한다)를 두되, 충청북도는 제외한다.</u></p> <p><u>제18조(심의회의 조직)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과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u></p> <p><u>② 중앙심의회의 위원장은 수산청 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수산청 시설국장이 된다.</u></p> <p><u>③ 지방심의회 위원장은 부지사(부시장을 포함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어항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이 된다.</u></p> <p><u>④ 중앙심의회의 위원은 건설부장관, 교통부장관이 추천하는 각 1인과 어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수산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u></p> <p><u>⑤ 지방심의회의 위원은 도지사가 어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u></p> <p><u>제19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항의 지정·변경 및 해제 2. 어항수축사업에 관한 시설계획 및 그 사업 계획 3. 제7조의 사용허가 또는 법 제23조의 일대에 관한 사항 4. 어항시설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 5. 법 제12조의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6. 기타 어항의 유지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p><u>제20조(위원회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u></p> <p><u>② 위원장이 사고를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u></p> <p><u>제21조(심의회의 의사) 심의회의 의사는 위원장과 부위원장과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u>제22조(간사 및 서기) ① 심의회에 간사 1인 및 서기 1인을 두는다.</u></p> <p><u>2. 간사는 어항업무를 관장하는 과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u></p> <p><u>제23조(수당과 여비) 심의회에 출석한 수산청 또는 도 소속 공무원 이외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u></p> <p><u>제24조(수당)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신) 설	<p><u>제25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항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2. 어항시설계획의 수립 및 변경(어항시설계획의 변경의 경우로서 제13조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3.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수산청장이 어항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p><u>제26조(위원회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u></p> <p><u>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u></p> <p><u>제27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u></p> <p><u>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u>제28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심의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u></p> <p><u>제29조(수당)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신) 설	<p><u>제30조(수당) 〈식〉 제</u></p>
(신) 설	<p><u>제31조(수당) 〈식〉 제</u></p>
(신) 설	<p><u>제32조(수당) 〈식〉 제</u></p>
(신) 설	<p><u>제33조(수당) 〈식〉 제</u></p>
(신) 설	<p><u>제34조(수당) 〈식〉 제</u></p>
(신) 설	<p><u>제35조(수당) 〈식〉 제</u></p>
(신) 설	<p><u>제36조(수당) 〈식〉 제</u></p>
(신) 설	<p><u>제37조(수당) 〈식〉 제</u></p>
(신) 설	<p><u>제38조(수당) 〈식〉 제</u></p>
(신) 설	<p><u>제39조(수당) 〈식〉 제</u></p>
(신) 설	<p><u>제40조(수당) 〈식〉 제</u></p>
(신) 설	<p><u>제41조(수당) 〈식〉 제</u></p>
(신) 설	<p><u>제42조(수당) 〈식〉 제</u></p>
(신) 설	<p><u>제43조(수당) 〈식〉 제</u></p>
(신) 설	<p><u>제44조(수당) 〈식〉 제</u></p>
(신) 설	<p><u>제45조(수당) 〈식〉 제</u></p>
(신) 설	<p><u>제46조(수당) 〈식〉 제</u></p>
(신) 설	<p><u>제47조(수당) 〈식〉 제</u></p>
(신) 설	<p><u>제48조(수당) 〈식〉 제</u></p>
(신) 설	<p><u>제49조(수당) 〈식〉 제</u></p>
(신) 설	<p><u>제50조(수당) 〈식〉 제</u></p>
(신) 설	<p><u>제51조(수당) 〈식〉 제</u></p>
(신) 설	<p><u>제52조(수당) 〈식〉 제</u></p>
(신) 설	<p><u>제53조(수당) 〈식〉 제</u></p>
(신) 설	<p><u>제54조(수당) 〈식〉 제</u></p>
(신) 설	<p><u>제55조(수당) 〈식〉 제</u></p>
(신) 설	<p><u>제56조(수당) 〈식〉 제</u></p>
(신) 설	<p><u>제57조(수당) 〈식〉 제</u></p>
(신) 설	<p><u>제58조(수당) 〈식〉 제</u></p>
(신) 설	<p><u>제59조(수당) 〈식〉 제</u></p>
(신) 설	<p><u>제60조(수당) 〈식〉 제</u></p>
(신) 설	<p><u>제61조(수당) 〈식〉 제</u></p>
(신) 설	<p><u>제62조(수당) 〈식〉 제</u></p>
(신) 설	<p><u>제63조(수당) 〈식〉 제</u></p>

改正漁港法

현 행	개 정 안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관리청이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 이외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항시설을 사용하고자 하거나, 수산업협동조합이 그 사업목적으로 어항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p> <p>④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항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수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⑤어항시설의 사용허기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수신청이 정한다.</p> <p>제14조(어항시설의 사용료)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 및 제3종어항의 어항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당해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절감되는 시간과 운반비·수송비 또는 하역비 등에 관하여 통상 받는 수익금액의 범위내에서 수신청장이 정한다.</p> <p>②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인근 지역의 임대료와, 임대등급을 참작하여 관리청이 정한다.</p>	
(신 설)	〈삭 제〉
	<p>제27조(어항시설의 공익목적의 사용 또는 접용범위) 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2. 어민의 공동이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기타 관리청이 주민의 공동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제28조(사용료등의 감면) ①법 제30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어항시설사용료 또는 접용료를 면제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가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군사상의 필요로 사용하는 경우 4. 제21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가 그 설립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5.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어항시설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p>②법 제30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어항시설사용료 또는 접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항구역안에서 수산물의 하역작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법 제2조제3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민편의시설로서 낙도의 보조항로를 운행하는 여객선의 여객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사용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국가에 귀속된 토지 또는 어항시설의 조성 또는 설치에 소요된 총사업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폐유·폐선의 처리등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3조(금지행위)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항을 유지·관리하는 수신청장 또는 도지사이(“관리청”이라 한다)는 어항구역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하여야 한다.	〈신 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항시설을 손괴하거나 손괴할 우려가 있는 행위 2. 유독물 또는 동물의 시체를 버리는 행위 3. 다른의 토석들을 버리거나 기타 어항의 심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4. 토석들을 채취하거나 식물을 재배 또는 채취하는 행위 5. 현저하게 수질을 오탁하게 하거나 국민보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 <p>제4조(장해물의 제거등) 관리청은 어항의 구역내에서 어선의 항행을 방해하거나, 항행에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류물, 침몰물 기타 물건을 설치 또는 투척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제지나 제거를 명할 수 있으며, 죽목·어구 기타 물건을 장기간 적치하는 행위등 어항시설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p> <p>제5조(어선교통의 제한) ①관리청은 어선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어항의 구역내에서 항로 또는 구역을 지정하여 어선의 통행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p> <p>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항로 또는 구역과 제한 또는 금지하는 기간은 관리청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p> <p>제6조(어항시설의 처분금지) 국유 또는 공유의 어항시설은 이를 양도하거나 이에 사전(임대를 제외한다)을 설정할 수 없다.</p>	〈삭 제〉
(신 설)	〈신 설〉
제24조(권한의 위임)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수신청장의 권한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이에게 위임한다.	〈신 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제2종어항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어항의 조사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제2종어항의 어항 수축사업자의 사업계획서의 승인에 관한 권한 중 도 이외의 지방자치단체나 법 제2조제2항제1호(다)의 항로시설, 동항 제2호(가)의 수송시설, (나)의 항행보조시설, (사)의 어업용 통신시설을 포함하지 아니한 사업계획서 승인권 및 당해사업에 관한 법 제18조의 준공검사권 4. 전호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 또는 제자리에 관한 승인권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의 승인 취소권 	〈신 설〉
제25조(권한의 위임)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수신청장의 권한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이에게 위임한다.	〈신 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접용에 관한 허가 신고 및 협의 2.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 또는 접용허기의 취소 및 사용 또는 접용의 정지명령 3.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또는 접용료의 징수 4.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 또는 제거를 위한 명령과 원상회복 또는 제거등을 위한 필요한 조치 5.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 또는 신고의 수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접용에 관한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 <p>②수신청장은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어항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단체로 하여금 어항시설의 보수 및 관리를 하게 하는 업무 2.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공사의 시행자 또는 어항시설을 손괴시키는 자등으로 하여금 어항시설사업을 시행하게 하는 업무 	〈신 설〉
제26조(권한의 위임)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수신청장의 일부를 일정한 기간 동점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어항시설의 설치목적으로 범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27조(어항시설의 사용허가) ①관리청은 어항시설의 일부를 일정한 기간 동점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어항시설의 설치목적으로 범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28조(청문절차) ①법 제18조제3항(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행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예정일의 10일전까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청문의 사유·일시 및 장소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29조(기속어항시설의 무상사용등) ①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관리청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 또는 어항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이 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30조(총사업비 및 전여토지기액의 산정방법) ①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는 당해 어항공사의 준공검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어항시설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 설〉
	〈신 설〉
1. 조사비 : 어항시설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 기타 어항의 설계를 위한 조사비로서 순공사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을 말하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한다.	〈신 설〉
2. 설계비 : 어항시설사업의 시행을 위한 설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한다.	〈신 설〉
3. 순공사비 : 어항시설사업의 시행을 위한 재료비·노무비 기타 직접공사에 소요되는 경비(공사중 필요한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으로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가격의 결정기준과 정부표준품셈 및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에 의한다.	〈신 설〉
4. 보상비 : 어항시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급된 토지매입비·건물임목등의 매입비를 포함한다. 이주대책비, 어항구역안의 시설을 이전할 경우 그 이전비 및 영업권·어업권·광업권등의 권리에 대한 보상비를 말한다.	〈신 설〉
5. 부대비 :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에 의한 일반민관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일반관리비·환경영향평가비·시공감리비등 어항시설사업의 시행허가조건의 이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신 설〉
6. 건설이자 :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에 대한 이자(이자를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중 관리청이 지정하는 대출금리로 한다)를 말한다.	〈신 설〉
②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이 취득하는 전여토지기액의 산정은 전여토지 취득당시의 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신 설〉

- 제7조(어항시설의 사용허가) ①관리청은 어항시설의 일부를 일정한 기간 동점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어항시설의 설치목적으로 범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②전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
 2. 시설물의 표시
 3. 시설물의 위치
 4. 사용기간

